

—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0월 13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0월 19일

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윤 영 섭

나. 제안이유

- 박정희 대통령 생가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방문객 편의제공 및 기념사업의 기반을 조성
- 노후시설인 원평2동 노인회관의 재건축 부지를 확보하고 개발지구(고아읍 원호7리, 4공단 이주단지)에 대한 노인회관 부지 확보

다. 주요내용

○ 취득재산

(단위:천원)

위 치	지 번	지 목	지적(㎡)	추정가액	용 도	비고
계	8필지		1,920.9	580,869		
상 모 동 (생가주변)	195-1외3 197-12	답 과수원	983 61	297,357 18,453	주변정비	

위 치	지 번	지 목	지적(m ²)	추정가액	용 도	비고
원 평 동	60-51	답	72.7	36,000	노인회관 부 지	
	60-58	대	85	103,000	"	
원 호 리	431	대	502	56,420	"	
옥 계 동	628-3	대	217.2	69,639	"	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시행령 제84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2000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안)은 박정희 대통령 생가주변 정비사업과 원평동 노인회관외 2개 개발지구에 대한 노인회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임.
- 생가주변 정비사업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5억원에 대한 사업으로서 2회에 걸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임.
- 노후된 원평동 노인회관 신축부지와 원호리, 옥계동의 개발지구에 대한 노인회관부지 확보는 복지행정을 확대하고자 함이나 생가주변 정비사업의 적정성,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함이 필요하며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